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815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815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소2734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준용, 이경익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0. 5. 7.

판결 선고 2020. 5.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소2734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5,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93,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천시 C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과 E는 2013. 5. 14.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5. 24. 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3. 11. 27.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0. 16.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2035 판결, 항소기각).

이어서 피고는 2014. 12. 20. D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5. 14. 소를 취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26208 사건). D과 E는 그 무렵인 2015.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점유기간 중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464,000,000원, 지급기일 2015. 12. 31.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201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5. 1. D과 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약정을 해지하면서 D과 E를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6. 6. 22. "D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6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30239 사건).

라. 피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31. D와 E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갖는 지장물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64,026,82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1910 사건).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7. 27. 같은 지장물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7230 사건).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지장물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피고 등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자 그 채권금액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2017. 12. 7. 실제 배당할 금액 78,659,859원 중 1·2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3,032,349원을 원·피고 등 6명의 공동 3순위 채권자들에게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다(수원지방법원 G 사건).1)

채권 금액	450,000,000원	49,621,320원	14,280,113원	60,000,000원	300,000,000원	11,000,000원
배당 비율	50.853%	5.608%	1.614%	6.78%	33.902%	1.243%
배당 금액	26,968,605원	2,973,818원	855,810원	3,595,814원	17,979,070원	659,23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와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인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발행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약속어음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은 D와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차임 상당액 지급채무의 담보로 발행된 것이므로, 적어도 배당일 당시 실제의 미지급 차임 상당액의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당한 배당금액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D과 E에 대한 미지급 차임 상당액 채권의 액수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에 대하여 초과배당이 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근거로 한 주장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채권비례액 초과 배당을 근거로 한 주장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155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때 부당이득의 범위는 배당이 잘못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금액, 즉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았을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1990. 11. 27.자 90다카28412 결정,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보았듯이 피고의 청구채권인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D과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액 지급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은 그 피담보채무 액수인 배당일 당시의 미지급 차임 상당액에 한정된다. 그런데 D과 E가 위 인정사실 나.항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2035 판결에서 정한 차임 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경우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D과 E에게 2013. 10.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액을 상한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8. 31. 위 공사에 협의취득됨으로써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D·E에 대한 채권 액수는 2013. 10. 16.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 6,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인 227,806,451원[$(34 + 16/31)$ 개월 $\times$ 6,6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그로 인하여 과소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의 채권을 227,806,451원으로 하여 3순위 공동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를 계산하면 662,707,884원(피고 227,806,451원 + H 49,621,320원 + (주)I 14,280,113원 + 원고 60,000,000원 + J 300,000,000원 + (주)K 11,000,000원)이 되므로, 그 중 피고가 배당받을 비율은 34.375%(227,806,451원 $\div$ 662,707,884원), 배당받을 금액은 18,229,919원(3순위 채권자들 배당금액 53,032,349원 $\times$ 34.375%)이 되고, 원고가 배당받을 비율은 9.054%(60,000,000원 $\div$ 662,707,884원), 배당받을 금액은 4,801,423원(3순위 채권자들 배당금액 53,032,349원 $\times$ 9.054%)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초과 배당받은 8,738,686원(이미 배당받은 금액 26,968,605원 - 정당한 배당금액 18,229,919원)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1,205,609원(정당한 배당금액 4,801,423원 - 이미 배당받은 금액 3,595,814원)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D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소송의 소가가 8,400여 만원이었던 점 등을 사유로 피고의 실제 채권 액수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5,6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²⁾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정인

판사김현석

판사당우증

1) 위 배당절차에서 2018. 2. 22. 추가로 528,397원에 대한 배당이 있었으나,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9768호에 따라 개정전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을 적용한다.